

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

1. 「노동조합법」 제2조·제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 시행

- 노동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, 사용자 범위·노동조합 대상·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노동조합법」 개정안 시행('26. 3.10)

<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>

- | | |
|--------------|--|
| · 사용자 범위 확대 |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|
| · 노조 요건 완화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|
| · 노동쟁의 범위 확대 |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|
| · 손해배상 제한 |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 금지, 조합원별 책임 비율 산정·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|

2.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안(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) 시행

-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안 시행('25.10.23)

<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주요내용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·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 | ①3개월분 임금 이상, ②5회 이상, ③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|
| · 경제적 제재 확대 |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및 국가·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, 낙찰자 결정 시 감점 |
| ·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|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(퇴직급여 체불 포함) |
| · 출국금지 |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가능 |

3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안 시행

-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 대지급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안 시행('26. 5.12)
 -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사업주 범위에 임금채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포함 (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)

4. 기타사항

- 건강보험료율 인상 : ('25년) 보수월액의 7.09%→('26년) 보수월액의 7.19%
 - ※ 사업주, 근로자 각 50% 부담
- 국민연금료율 인상 : ('25년) 표준월소득액의 9%→('26년) 표준월소득액의 9.5%
 - ※ 사업주, 근로자 각 50% 부담
-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하 : ('25년) 4,806,267원→('26년) 4,798,427원
 - ※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
- 최저임금 인상 : ('25년) 10,030원→('25년) 10,320원
 - ※ 일급(8시간) 82,560원, 월급(209시간) 2,156,880원
-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(1인당/월) 인상 : ('25년) 1,258천원→('26년) 1,295천원
-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: ('25년) 0.06%→('26년) 0.09%
- 기존 '근로자의 날'(5. 1) 명칭을 '노동절'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